

☎04373 서울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[<http://www.kma.org>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장 김기성[6574]/ 보험팀장 백영기[6581]/ 부장 김상구[6573]/ E-mail:richard39_kr@hanmail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5314호

시행일자 2020. 7. 3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」 고시 일부 개정 안내

1. 귀 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.

2. 관련근거 :

- 1)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0 - 156호(2020. 7. 23.)
- 2) 보건복지부, 기초의료보장과-4203호(2020. 7. 24.)

3. 보건복지부(기초의료보장과)가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7호, 제8조의 3제4항·제5항 및 별표1제4호에 따른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」을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함에 따라 관련 자료를 송부하여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들에게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개정사항 (시행일 : 2020. 7. 23.)

-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「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」 “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-19[실시간역전사중합효소연쇄반응법] 검사의 급여기준”의 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(제2조제1호), 의료급여 절차의 예외 인정

※ 붙임 : 「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 의료급여 절차 예외 인정기준」 고시 일부 개정 안내문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

수신처 : 각 시도 의사회장, 각 학회장, 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, 각 과 개원의협의회장